

동작구의회공고 제2023-72호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3년 8월 28일  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

##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1. 제안이유

최근 서울특별시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기존의 ‘여성우선주차장’을 ‘가족배려주차장’으로 전환하였음. 이에 따라 서울시 내 공공주차장에 통일적인 시행이 가능하도록 정비하고, 그밖에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를 순화하고,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가족배려주차장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
- 나. 가족배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규정함(안 제25조)
- 다.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여 정비함(안 제6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, 제15조, 제20조, 제21조)
- 라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함(안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8조, 제9조, 제12조, 제13조, 제15조, 제18조, 제21조, 제24조, 제27조, 제30조, 제31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 의장 [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(노량진동47-2)]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(전화 : 820-1715, FAX : 820-1474, E-mail : kyh06800@dongja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##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용어의 정의)”를 “(정의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한한다”를 “한정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“여성우선주차장”이란 여성”을 ““가족배려주차장”이란 임산부·영유아·이동이 불편한 사람 등과 이들을 동반한 사람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구민”을 “서울특별시 동작구민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 제3조”를 “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3조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실태조사결과”를 “실태조사 결과”로, “70이하”를 “70 이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밀집지역”을 “밀집지역을 말한다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10호 중 “제10조”를 “제12조”로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이유없이”를 “이유 없이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3호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, “주민자치위원회”를 “주민자치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의한 위탁관리수수료는 매월말”을 “따른 위탁관리수수료는 매월 말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제7조”를 “제9조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제12조제1항”을 “제14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”를 “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구보”를 “서울특별시 동작구보”로 한다.

제13조의2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중 “경우 :”를 각각 “경우:”로 한다.

제15조의 제목 “(하역주차구간)”을 “(하역주차구획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하역 주차구간”을 “하역주차구획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하역주차 구간에는 제14조제2항”을 “하역주차구획에는 제16조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하역주차 구간”을 “하역주차구획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(수탁자포함)는 하역주차구간”을 “(수탁자를 포함한다)는 하역주차구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하역주차 구간”을 “하역주차구간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1일주차권 :”을 “1일주차권: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월정기권 :”을 “월정기권: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21조제3항 중 “제8조 또는 제9조”를 “제11조 또는 제14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법 제12조 제6항”을 “법 제12조제6항”으로 한다.

제21조의2제1항 전단 중 “3퍼센트이상”을 “3퍼센트 이상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3항 전단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25조의 제목 “(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)”을 “(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주차면수”를 “주차면수가”로, “설치하되, 설치기준은”을 “가족배려주차장을 설

치하되, 설치기준은 총주차대수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“여성우선주차장”을 각각 “가족배려주차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중 “분홍색”을 “꽃담황토색”으로, “여성마크”를 “가족배려주차장 마크”로 한다.

제27조제1항제3호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5분의2”를 “5분의 2”로 한다.

제27조의2제1항 중 “2분의1”을 “2분의 1”로 한다.

제30조제2항제2호 중 “허위 또는”을 “거짓이나”로 한다.

제31조 중 “조례 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조례의 시행에”로 한다.

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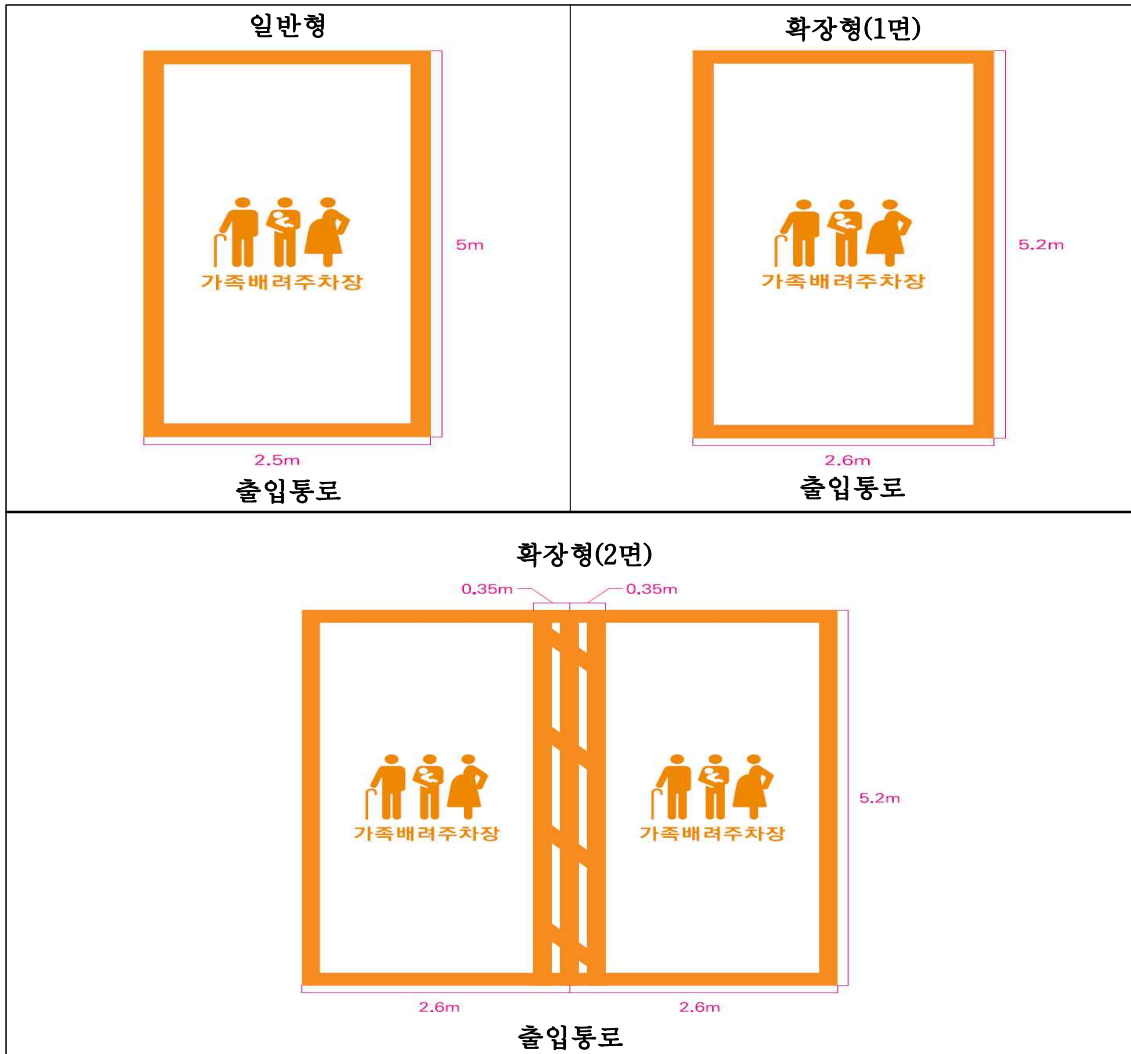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개정규정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본다.

[별표 3]

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(제25조제3항 관련)



- 비 고 -

-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(가로 2.5m이상 × 세로 5m이상)과 확장형 [가로 2.6m이상 × 세로 5.2m이상, 2면의 중앙여유공간 0.7m(각각 0.35m)를 사선표시] 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
- 가. 그림문자(가로 140cm × 세로 100cm)는 주차면 중앙에 꽃담황토색으로 표시
- 나.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를 그림문자 아래에 꽃담황토색으로 병기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“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”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(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<u>한한다</u>)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</p> <p>3. (생 략)</p> <p>4.“여성우선주차장”이란 여성이 우선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주차장의 확보 노력 의무) 자동차를 소유한 <u>구민</u>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서울특별시 동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·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제4조(주차장 수급실태 조사) 구청장은 법 제3조와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1조의2,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뜻은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한정한다</u>----- -----.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“가족배려주차장”이란 <u>임산부·영유아·이동이 불편한 사람 등과 이들을 동반한 사람</u>-----.</p> <p>제3조(주차장의 확보 노력 의무) 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동작구민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4조(주차장 수급실태 조사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</p>

및 관리조례」 제3조에 따라 주차장  
수급실태 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“이라  
한다)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5조(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·관  
리)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 
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의 조사구  
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 
따른 실태조사결과 주차장 확보율(주  
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  
수를 나눈 비율을 말한다)이 100분  
의 70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 
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  
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  
할 수 있다.

- 1. 2. (생략)
  - 3. 주택가(다세대·다가구 밀집지  
역)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
- ②·③ (생략)

제6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 (생  
략)  
②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에  
따른 노상·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  
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 
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구분  
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  
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

관리 조례」 제3조-----  
-----  
-----.

제5조(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·관  
리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 실태조사 결과-----  
-----  
-----  
70 이하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- 1. 2. (현행과 같음)
  - 3. ----- 밀집지역을  
말한다-----
-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 (현행과  
같음)  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하며,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.

1. ~ 9. (생략)

10.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주차구획에 지정 차량이 아닌 차량이 주차한 경우

③ (생략)

제8조(주차거부 금지)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, 법 제17조제2항,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.

1. ~ 8. (생략)

제9조(공영 주차장의 위탁관리)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(이하 “관리수탁자”라 한다)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·2. (생략)

3.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10. 제12조-----  
-----  
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주차거부 금지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이유 없  
-----.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제9조(공영 주차장의 위탁관리) ① 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 
-----  
-----



같은 법 제67조에 의한 시장관리자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은 지역특성 등 제반여건을 합리적으로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(생략)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수수료는 매월말 납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에 교부한다. 다만, 최초 개시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수수료를 사전 교부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제10조(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·감독)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·감독한다.

제11조(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) 관리수탁자는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차요금을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·운용할 수 있다.

제12조(전용주차구획의 설치·운영)

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

----- 따른 -----

주민자치회 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따른 위탁관리수수료는 매월 말 -----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·감독) ----- 제9조 -----

제11조(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) ----- 제14조제1항 -----

제12조(전용주차구획의 설치·운영)

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-----

동차라 함은 경찰관서에서 상시 이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.

②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, 이용대상차량, 운영시간,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13조의2(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)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.

1.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: 한 면 이상
2.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: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

제15조(하역주차구간)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 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.

② 하역주차 구간에는 제14조제2항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, 제한구역, 제한사유

-----  
-----.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서울특별시 동작구보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3조의2(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-----  
----- 경우: -----
2. ----- 경우: -----

제15조(하역주차구획) ① -----  
----- 하역주차구획-----  
-----.

② 하역주차구획에는 제16조제2항-----  
-----  
-----

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 하여야 한다.

③ 하역주차 구간에는 식별이 쉬운 보조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④ 노상주차장관리자(수탁자포함)는 하역주차구간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차종에 따라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.

⑤ 하역주차 구간의 주차요금의 요율은 별표 2와 같다.

제18조(주차요금징수방법) ① (생략)

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 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당해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

1. 1일주차권 : 1일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는 주차권에 대한 금액

2. 월정기권 :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

제20조(주차장의 표지) ① (생략)

-----  
-----.

③ 하역주차구획-----  
-----.

④ -----(수탁자를 포함한다)는 하역주차구획-----  
-----.

⑤ 하역주차구간-----  
-----.

제18조(주차요금징수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따라 -----  
-----.

1. 1일주차권: -----  
-----

2. 월정기권: -----  
-----

제20조(주차장의 표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4조제2항은 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③ (생략)

제21조(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) ①·② (생략)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, 증축, 개축할 때에는 「건축법」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.

④ 법 제12조 제6항에 따른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, 업무시설(오피스텔은 제외한다), 운동시설로 한다.

⑤ (생략)

제21조의2(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) ①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

② 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제11조 또는 제14조-----.

④ 법 제12조제6항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21조의2(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) ① ----- 3퍼센트 이상-----.

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 
본다.

② (생략)

제24조(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  
용에의 제공) ①·② (생략)

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공영노  
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 안에서  
정한다.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주차수  
요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할  
수 있다.

제25조(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  
치기준 등)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  
라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주차  
면수 30면 이상인 노상·노외·부설  
주차장에 설치하되, 설치기준은 10  
퍼센트 이상으로 한다.

②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  
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, 다음  
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 
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③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  
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, 주차  
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  
여 별표 3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
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  
용에의 제공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범위-----  
-----.  
-----

제25조(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  
치기준 등) ① -----

- 주차면수가 -----  
-----  
----- 가족배려주차장을 설치하되,  
설치기준은 총주차대수의 -----  
-----.

② 가족배려주차장-----  
-----  
--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③ 가족배려주차장 -----  
꽃담황토색 -----  
-----  
----- 가족배려주차장 마



1. ~ 4. (생략)

제27조의2(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) ①  
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  
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  
거함으로써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  
치 및 관리 조례」 별표 2에 따른 부  
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 
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 
주차대수의 2분의1(소수점이하 버  
림)대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30조(용자금 및 보조금·공사비의  
반환) ① (생략)

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 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 
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
2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 
금을 교부받았을 때

3. (생략)

③·④ (생략)

제31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  
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 
다.

[별표 3]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27조의2(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) ①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2분의 1 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0조(용자금 및 보조금·공사비의  
반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거짓이나 -----  
-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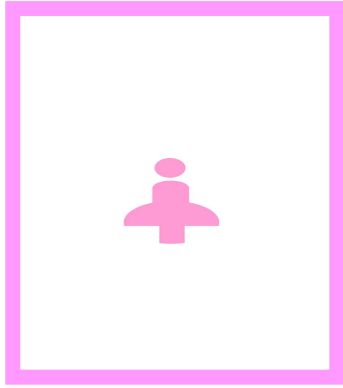
3. (현행과 같음)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31조(시행규칙) -- 조례의 시행에 -  
-----.

[별표 3]

**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**(제23조제3항 관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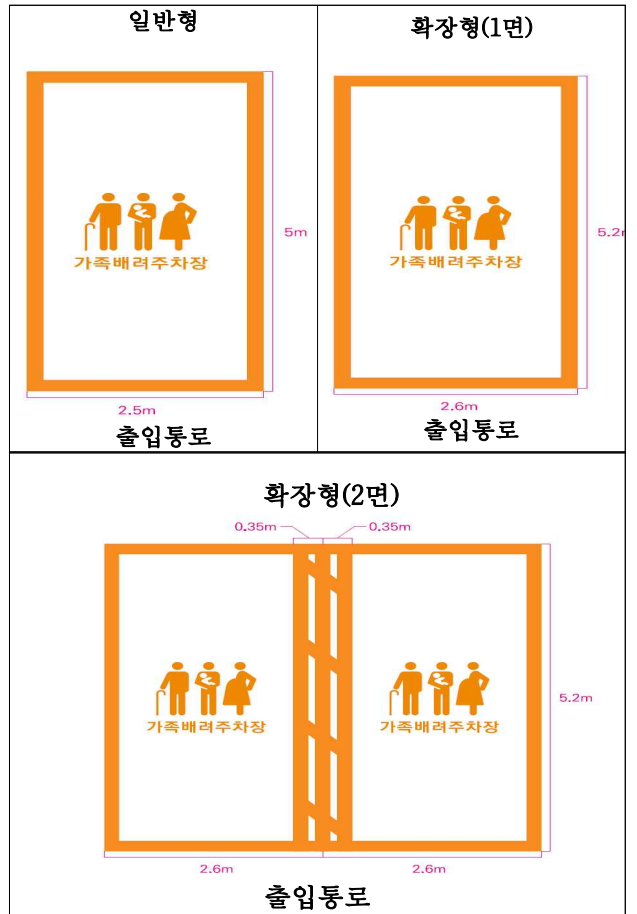


**출입통로**

- 비 고 -

1.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(가로 2.3m이상×세로 5m이상)과 확장형(가로 2.5m이상×세로 5.1m이상, 2면의 중앙여유공간 0.7m(각각 0.35m)를 사선표시)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따르되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  
 가. 여성마크(픽토그램) 표시 : 가로 75cm × 세로 155cm
2. 색채 : 여성마크의 색은 분홍색(여성마크 그림)을 사용한다.
3. 설치위치 : 여성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분홍색으로 표기한다.

**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** (제25조제3항 관련)



- 비 고 -

1.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(가로 2.5m이상 × 세로 5m이상)과 확장형 [가로 2.6m이상 × 세로 5.2m이상, 2면의 중앙여유공간 0.7m(각각 0.35m)를 사선표시] 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  
 가. 그림문자(가로 140cm × 세로 100cm)는 주차면 중앙에 꽃담 황토색으로 표시  
 나.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를 그림문자 아래에 꽃담황토색으로 병기